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실시근거
마련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05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실시근거 마련(안 제12조제4항 신설) ..	3
2. 조사 거부·방해 금지의무의 후단 이동(안 제12조제5항 후단 신설 등)	12
3.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16
IV . 입법의 재정영향	26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6. 25.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 고령화와 농업기계의 대형화 및 다양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안전장치 부착이나 개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지원 조항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는 주행 중 전도·전복 및 추돌 등의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의식을 잃거나 고립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이로 인해 사고 발생 후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

히 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고의 경중을 자동으로 판단해 소방서와 경찰서에 즉각 신고하는 ‘농업기계 사고자동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실시근거 마련(안 제12조제4항 신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안전관리) ① 삭제 ② 삭제 ③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이하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라 한다)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改造)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u><신설></u>	제12조(안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의 검토에 앞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관한 현행 규율체계를 ① 대상의 지정 단계, ② 제조·유통 단계, ③ 보유·사용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① 대상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12조제3항¹⁾은 “농업용 트랙터,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 ③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이하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라 한다)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의 구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로 정의하고 있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은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2는 임의로 개조·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안전장치를 기종별로 정하고 있음.²⁾

다음으로, ② 제조·유통 단계에서는 현행법 제9조³⁾의 검정제도를 통하여 안전장치 관련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같은 조 제1항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검정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⁴⁾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반면, 보유·사용 단계에서는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안전장치의 부착

를 임의로 개조(改造)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농업기계는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는 별표 12와 같다.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 자

을 직접 명하는 규정은 없고, 현행법 제12조제3항⁵⁾이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변경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안전장치의 부착 여부와 임의 개조·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임의 개조·변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단을 두고 있음.⁶⁾

【 농업기계 안전장치에 관한 현행 규율체계 】

구 분	규 율 내 용	근 거 규 정
대상 지정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와 임의 개조·변경이 금지되는 안전장치를 기종별로 지정	법 제12조제3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조·유통	제조업자·수입업자의 검정 의무 및 미검정·부적합판정 농업기계의 판매·유통 금지	법 제9조제1항·제2항 법 제19조제1항
보유·사용	소유자·사용자의 안전장치 구조 임의 개조·변경 금지(부착 의무는 규정하지 아니함)	법 제12조제3항~제8항 법 제19조제3항

※ 관계법령 재구성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 ③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이하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라 한다)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改造)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6)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4.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별표 11의2에 따른 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에 대해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상의 규율체계를 보면, 현행법상 ‘안전장치’는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및 별표 12에서 기종별로 정한 장치로서, 검정대상 농업기계는 제조·수입되어 유통되기 전에 검정기준에 따라 그 구조·성능의 적합 여부가 확인되고,

보유·사용 단계에서는 소유자나 사용자가 그 구조를 임의로 개조·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농업기계의 안전장비를 의미함.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 (제18조의2제2항 관련)

1. 가동부의 방호
2. 동력취출장치 및 동력입력축의 방호
3. 안전장치
4. 제동장치
5. 운전석 및 그 밖의 작업장소
6. 운전·조작장치
7. 작업기 취부장치 및 연결장치
8. 계기장치
9. 등화장치
10. 고온부의 방호
11. 돌기부 및 예리한 단면 등의 방호
12. 비산물의 방호
13. 축전지의 방호
14. 안정성 관련 장치
15. 작업등
16. 전도 시 운전자 보호장치
17. 안전표시
18. 취급성 관련 장치
1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반면, 안 제4항의 ‘안전장치’는 현행 부착 지원 대상사업인 등화장치·안전반사판과 같은 사고예방 장치뿐만 아니라, 후방영상장치·경보장치 및 안 제10항·제11항의 사고자동신고시스템과 연계되는 사고감지·정보전송장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임.

이러한 장치는 기존 농업기계에 추가로 부착·설치하여 식별성을 제고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넓히며, 위험을 경고하거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구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

【 현행법상 안전장치와 개정안의 안전장치 비교 】

구 분	현행법상 안전장치	개정안 안전장치
주요기능	농업기계의 구조적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	사고 예방·운전 보조 또는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응
법적성격	기종별 검정기준과 연계되는 필수 안전설비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장치가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착·설치·교체 비용 지원대상이 되는 보조적 안전장비
적용단계	제조·수입·유통 전 검정 및 보유·사용 단계의 임의 개조·변경 금지	기존 농업기계에 사후 부착·설치하거나 교체
주요예시	기종별 안전장치(시행규칙 별표 12)	등화장치·안전반사판·후방영상장치·경보장치·사고감지 및 정보전송 장치 등
관련조항	현행 제12조제3항~제9항	안 제4항 및 제11항·제12항(일부 장치의 시스템 연계)

그런데, 안 제4항의 “안전장치”는 현행법상 검정제도 및 임의 개조·변경 금지 규율과 연계된 “안전장치”와 그 개념·범위 및 규율 목적이 다름에도 동일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안 제4항의 지원대상에 현행법상 안전장치가 포함되는지, 반대로 안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 장치가 임의 개조·변경 금지, 조사 및 시정명령 등 현행 규율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져 법률의 명확성과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안 제4항의 지원대상 장치가 현행법상 안전장치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별도의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농업기계의 안전 관련 장치에는 등화장치·안전반사판·후방영상장치 등 ‘사고예방형’ 장치와 사고감지·정보전송 장치 등 ‘사고대응형’ 장치가 있으므로, 안 제4항은 두가지 성격의 장치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대체 용어 검토 】

대 안	검 토 내 용
안전보조장치	기존 농업기계의 안전을 보완하는 지원대상이라는 성격이 드러나고, 사고예방형 장치와 사고대응형 장치를 함께 포괄할 수 있음.
사고예방·대응장치	기능과 범위는 비교적 명확하나 용어가 길고 병렬적인 표현이어서 조문에서 반복하여 사용하기에는 다소 복잡함.
사고예방장치	등화장치·반사판·후방영상장치 등은 포괄할 수 있으나 사고감지·정보전송장치와 같은 사고 후 대응 장치를 포함하기 어려움.
안전강화장치	포괄성은 있으나 어떠한 기능의 장치를 의미하는지 추상적이어서 지원대상의 외연을 파악하기 어려움.
사고감지장치	사고자동신고시스템과 연계되는 장치를 정확히 나타내지만 등화장치·반사판·후방영상장치 등 사고예방형 장치를 포괄하기에는 범위가 좁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 제4항의 ‘안전장치’를 ‘안전보조장치’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농업 현장의 농업기계 안전사고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2024년 기준 농작업 중 사망한 농업인 297명 가운데 186명(62.6%)이 농업기계 관련 재해로 사망하였고, 농업분야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 재해율의 7.5배, 사망률은 3.1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⁷⁾

7) 농촌진흥청 의견 제출

이러한 농업기계 안전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경우 ‘안전반사판’⁸⁾과 ‘등화장치’⁹⁾의 부착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도 연 6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안전보조장치 전반에 관한 지원체계로는 보기 어려움.

【 농업기계 안전장치(안전반사판·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개요 】

- **(현황)** 농업기계 이동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을 **의무화**(**10.4.2**)하였으나 사고* 지속 발생
- 농업기계 교통사고(경찰청, 제1당사자): ('20)367 → ('21)364 → ('22)330 → ('23)290 → ('24)277
-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13.1%)**은 일반교통사고 치사율(1.4%)의 **9.5배 수준**으로 높아('20~'24 경찰청) 부착지원 필요
- **(25년 실적)**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화장치 및 안전반사판 부착지원하고 농업인 대상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인식 제고
- **도로주행 농기계**(트랙터, 경운기)에 저속차량 표시등,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국비 6억원, 지방비 9억원)
- 트랙터, 경운기 등에 **안전반사판(지) 등 부착 지원**(1,333개)
- 농업인 대상 농업기계 사고예방 **안전교육·홍보**(610명)
- (협력) 국토부/교통안전공단, (전북)교통안전공단/농업기술센터, 농협손해보험 등
- **(26년 계획)** 도로주행 트랙터·경운기에 등화장치 부착 및 농업기계 사고예방 안전교육 지속 추진
- 농업인 **수요조사**를 통해 등화장치 **부착**(국비 6억원, 지방비 9억원) 및 농업기계 **안전반사판 부착 지원**(1,000개), **안전교육**(600여명) 실시

※ 2026년 농업기계화 시행계획 내용 중 발췌

이와 같이 농작업 사망자의 62.6%가 농업기계 사고로 사망하는 등 농업 현장의 농업기계 안전사고가 심각한 점과, 기존 지원사업만으로는 농업기계 안전보조장치 전반을 지원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8) 농업기계에 부착하여 다른 차량의 전조등 등을 반사함으로써 야간 식별성을 높이는 장치

9) 농업기계의 위치·진행 방향 등을 표시하거나 전방을 비추기 위하여 부착하는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등·저속차량표시등 등의 장치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지원사업의 범위를 “안전보조장치 부착”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확장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정부 의견과 같이 지원근거를 농업기계 안전 강화 전반으로 확대 하면, 향후 다양한 안전관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라고만 규정할 경우 지원대상과 사업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안전보조장치의 부착·설치·교체 등’으로 대표적인 지원내용을 예시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와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안전보조장치’는 현행법상 안전장치와 구분되면서도 사고예방형 장치와 사고대응형 장치를 모두 포괄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그 기능을 ‘농업기계 사고의 예방 또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명시하고, 하위법령에서 등화장치·안전반사판·후방영상장치·경보장치·사고감지 및 정보전송 장치 등 구체적인 종류와 성능기준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집행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2조제4항 관련 수정의견(제10항·제11항으로 조정) 】

개 정 안	수 정 의 건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⑩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계 사고의 예방 또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장치(이하 “안전보조장치”라 한다)의 부착·설치 또는 교체 등 농업기계의 안전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⑪ <u>제10항에 따른 안전보조장치의 종류 및 성능기준,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2. 조사 거부·방해 금지의무의 후단 이동(안 제12조제5항 후단 신설 등)

개정안은 현행 제5항(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금지)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현행 제4항(개정안 제5항)의 후단으로 옮기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9조제3항제5호의 인용조문을 각각 “제5항 전단” 및 “제5항 후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안전관리)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2조(안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에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u><삭제></u> ⑥ 제5항 전단----- ----- ----- -----.

현행	개정안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⑦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조사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제5항 전단----- -----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제4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변경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 전단----- ----- -----.
제19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1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2조제5항 후단-----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안 제12조제4항에 안전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하면서 현행 제4항의 조사권한과 제5항의 조사 수인의무를 안 제5항의 전단과 후단으로 통합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의 이러한 조문 정비방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사권한과 이에 대응하는 수인의무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전단과 후단의 수범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후단에서 “이 경우”를 사용하여 수인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위 수인의무는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구성요건이 되는 의무규정임.

제재규정의 전제가 되는 의무는 그 내용과 수범자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독립된 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고, 개정안과 같이 이를 후단으로 이동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근거조문이 “제12조제5항 후단”이 되어 조문 인용이 다소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음.

【 유사 입법례 】

「종자산업법」
제36조의8(무병화인증 관련 점검·조사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조사를 위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은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u>
「식품산업진흥법」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우수식품등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2.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인증을 받은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⑥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출입차량 또는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작동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전보조장치 지원사업의 근거와 그 위임규정을 현행 제9항 다음인 제10항 및 제11항으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이 조사권한과 조사 수인의무를 하나의 항으로 통합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현행 제4항 및 제5항은 종전과 같이 각각 독립된 항으로 유지하고, 개정안의 제5항 후단 신설 및 현행 제5항 삭제와 이에 수반되는 같은 조 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9조제3항제5호의 인용조문 정비 부분은 삭제하며, 사고자동신고시스템 관련 조항은 제12항 및 제13항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용 트랙터·경운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제10항), 이를 직접 구축·운영하거나 일정한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제조·유통업체에 위탁하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1항).

현행	개정안
<신설>	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발생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사물인터넷 기반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고의 경중을 판단하고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⑪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

현행	개정안
	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업기계 사고는 고령 운전자¹⁰⁾에 의한 단독 사고의 비중이 높고, 소규모 농작업의 특성상 나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119 신고 및 구조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소가 일반적으로 병원시설과 거리가 있어 병원까지 도착 소요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43%로, 전체 이송(11.9%) 대비 약 3.6배나 높은 실정임.

【 농기계사고 구급차량 이송 소요시간 】



※ 자료: 소방청 보도자료[2023.10.17.(화)]

10) 2025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2년 49.8% → '23년 52.6% → '24년 55.8% → '25년 51.0%(잠정)

또한, 2024년 기준 농작업 중 사망한 농업인 297명 가운데 186명(62.6%)이 농업기계 관련 재해로 사망하였고, 농업분야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재해율의 7.5배, 사망률은 3.1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농업 현장의 농업기계 관련 안전사고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한편, 이러한 농업기계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은 2018년 사고감지 단말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2019년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범운영 및 효과평가를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고감지 단말기 1,297대를 10개 시·도 27개 시·군에 시범 보급하여왔음.

또한, 농촌진흥청은 2025년 12월 9일 소방청과 농업기계 사고신호를 119다매체신고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2026년 6월 2일 소방청으로부터 연계 승인을 통보받는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6월 5일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도 IoT 농기계 사고정보의 119 연계 기술개발(2026년)과 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안전장치 개발(2026~2027년)이 정책과제로 제시된 바 있음.

이와 같은 사고현황, 기술개발 및 시범보급 경과, 관계기관과의 연계와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등을 고려할 때, 농업기계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긴급구조기관에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정의 명확성, 관계기관과의 연계, 개인정보 보호, 위탁규정의 적정성 및 재정소요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의 정의 및 적용대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12조제10항은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을 “사물인터넷 기반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고의 경중을 판단하고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여 ① 특정 기술방식, ② 사고 경중의 자동판단 및 ③ 신고기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① 사고 감지·전송 기술은 통신기술과 센서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② 사고의 경중을 자동으로 판단하는 기능은 오작동이나 과소판단 시 구조 지연과 책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③ 신고의 접수·처리 체계도 관계기관의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기술방식과 신고기관을 고정할 경우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를 “농업기계의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고 발생 및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등에 전송하는 체계”와 같이 기능 중심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술방식과 통보 대상 기관 및 절차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12조제3항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로 정의하고 있고, 그 대상에는 경운기와 스피드스프레이어¹¹⁾도 포함되어 있음.

이에 별도의 대상 범주를 신설하기보다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와 같이 현행법상 용어를 활용하는 한편,

대상 기종을 정할 때에는 사망사고 발생 현황뿐 아니라, 보유대수 대비 사고위험과 사고 감지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경운기·트랙터·스피드스프레이어는 2024년 농업기계 관련 사망자 186명 중 137명으로 73.7%를 차지하나, 현재 개발된 단말기는 주로 전도·전복을 감지하는 방식이므로, 끼임·감김 등 다른 유형의 사고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11) 스피드스프레이어(speed sprayer): 과수원 등에서 주행하면서 송풍기를 이용하여 농약을 분사하는 방제용 농업기계.

【 농업기계 관련 사망재해 기종별 현황('24) 】

구 분	경운기	트랙터	스피드 스프레이어	트럭	관리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기타	총계
사망자수(명)	96	29	12	9	9	7	24	186
분포(%)	51.6	15.6	6.5	4.8	4.8	3.8	12.9	100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2024년 농업인안전보험 보상자료 분석결과)

둘째, 긴급구조 체계와의 연계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사고 발생 시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사고정보를 양 기관에 동시에 전송할 필요가 있는지는 사고 유형과 현행 신고·출동 체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과의 연계는 119다매체신고시스템과의 연동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나, 경찰청과의 협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경찰에 대한 통보가 필요한 경우와 그 절차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오인신고나 감지 누락은 구조 인력의 불필요한 출동 또는 구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고신호의 확인 절차와 오탐지 처리방식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은 사고 발생 위치, 이용자 식별정보 및 기기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및 운영주체의 법적 지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¹²⁾은 긴급구조기관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기계가 자동으로 전송하는 사고신호가 이러한 긴급구조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용자의 사전 신청·동의를 통한 운영이 가능한지,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민간위탁 시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접근권한 관리 및 위탁 종료 후 반환·파기 등에 관한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안 제12조제11항의 위탁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사고자동신고시스템 자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의 대상은 시스템이 아니라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이므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사 입법례 】

「의료법」
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u>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u> 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자격기본법」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③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u>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u>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 <u>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u> 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수탁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고정보의 신속한 처리와 긴급구조 기관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기술능력 및 정보보호 체계 등도 필요함.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으로 수정하여 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종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u>인력·기술능력·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u>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1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기술인력·재정능력·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u> 중에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보관등에 필요한 <u>인력·기술능력·재정능력</u> 과 제31조의9제6항에 따른 인적·물적 측면에서 독립성 및 그 밖의 <u>시설·장비 등을 갖추어</u>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섯째, 시범사업의 검증 결과와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 및 규모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촌진흥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고감지 단말기 1,297대가 보급되었으나, 실제 사고를 감지하여 자동신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휴대전화 조작 실수에 따른 오인신고 1건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사고감지 단말기 시범보급 현황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보급 대수(대)	250	140	400	190	317	1,297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또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실시한 시범운영은 농업기계 20대를 대상으로 약 1개월간 진행되었고, 당시 확인된 정량적 효과도 사고자동신고 기능이 아니라 농기계 주행안내 교통표지판 설치에 따른 차량 통행속도 감소였음.

이에 따라, 실제 사고 상황에서의 감지 정확도와 구조시간 단축효과
 과는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농촌진흥청은 2026년 9
 월부터 12월까지 119다매체신고시스템과 연계한 시범운영을 통해
 해당 효과를 분석할 예정임.

한편, 농촌진흥청이 경운기·트랙터·스피드스프레어의 보유대수
 약 76만 2천 대 중 85%에 단말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
 정소요를 산정한 결과, 연간 567억 500만원, 4년간 약 2,26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산정 】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보급 대수(누적, 천 대)	162	324	486	648
소요액(백만원)	56,705	56,705	56,705	56,705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따라서,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실제 사업의 착수 시기와 보급 규모는 시범운영을 통해
 사고 감지의 정확성, 구조시간 단축효과 및 오인신고 발생 가능성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³⁾

문 의 처

02)6788-5426

13)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